

제439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9월29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7)
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4)
1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3)
1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91)
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2)
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5)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452)
2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5)
2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4)

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8)
2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4)
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7)
2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9)
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7)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0)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1)
3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8)
3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5)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9)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4)
3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1)
37.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4)
38.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2)
39.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1)
4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7)
41.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6)
4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6)
4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5)
4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372)
45.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93)
4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0)
47.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81)

4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18)
49.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8)
50.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62)
51.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4)

### 상정된 안건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 4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 4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 4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 5
2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5) ..... 29
2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4) ..... 29
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8) ..... 29
2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4) ..... 34
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7) ..... 34
2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9) ..... 34
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7) ..... 37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0) ..... 37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1) ..... 37
3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8) ..... 37
3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5) ..... 38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9) ... 40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4) ... 40
3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1)

|                                                               |    |
|---------------------------------------------------------------|----|
| .....                                                         | 48 |
| 37.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4)          | 48 |
| .....                                                         | 48 |
| 38.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2)          | 48 |
| .....                                                         | 48 |
| 39.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1) | 48 |
| 4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7)    | 48 |
| 41.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6)    | 48 |
|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 61 |
|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 61 |
|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 62 |
|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 62 |
|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 62 |
|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 62 |
|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 62 |
|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 62 |
|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 62 |
|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 62 |
|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 62 |
|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7)                | 62 |

(10시08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원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소위에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 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6)

(10시09분)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권 보시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문별 검토입니다.

3페이지에는 윤준병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이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기금에 출연을 노력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 일반회계 전입 및 수혜기업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이 기금에 출연 노력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를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박수현 의원안은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연간 1000억 원, 10년간 총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조성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기금 조성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산업·품목·기업별로 상이하여 수혜기업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가 등이 민간기업에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자금이 상생협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운용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운용능력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나 동 기금은 민간기금으로서 그간 3285억 원에 달하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정부와 국회가 그 집행내역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 재원에 관세를 연계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통상환경 개선으로 주된 이익을 보는 주체가 수출기업이라는 점에서 정합성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6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의 상생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규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한적인 정부 출연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출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별도 관리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혜기업 대표 단체·협회의 소속 기업에 대한 출연 협조 요청을 신설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의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료 공개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매년 기금의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기금 조성의 활성화, 재원의 주체, 재원 내용, 기금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앞으로 FTA라든가 이런 체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 기금이 또다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지적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조성된 자금이 상생협력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운용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운용능력이 적정한지’ 이걸 지금 조성되는 것도, 제대로 쓰인 것도 없고 이게 무슨 목적으로 조성된지도 모르겠고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다음에 ‘동 기금은 민간기금으로서 그간 3285억 원에 달하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랬대요. 어떤 특정 대기업이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금에 좀 기부해야 되겠다 해서, 지정기탁이 대부분이고 그 지정기탁한 것이 그 기업을 위한 건지 FTA 체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에 조성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정부와 국회가 그 집행내역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여기에다 또 정부가 예산을 넣겠다는 거예요. 민간이, 지금 의원님들 입법에서 의무화한다고 했더니 수출기업에 의무화하는 것은 정합성에 안 맞다는 거고 일부 의원은 또 정부가 여기에다 기금을 각출하도록 한다…… 정부가 예산을 기금에 넣든 농업에 쓰든 그게 무슨, 예산이 그대로 쓰이는 게 뭘 차이가 있어요?

대신 이 기금에서는 FTA로 피해를 받는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목적만 있고 실제 내용은 다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 정부예산이 들어간들 그게 피해 농민들에게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이 기금 자체는 조성을 뭐 1조 원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기금을 정부가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FTA 등 체결으로 피해 농민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재설계해야 되고 이 기금을 통해서 다시 CPTPP 등의 체결에 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에 정부예산 넣는 것도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먼저 운용 공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번 법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 공개 내용이 현재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하고 기금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피해 보는 농업에 대한 지원은 별도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예산 외에 정부가 직접하기 어려운, 정부 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FTA법에서는 6대 분야로 나뉘져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 뭐 CPTPP가 됐든 FTA가 됐든 추가적으로 한다면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 생각은 실질적으로 농어업인들이 참여하는 피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 설계를 좀 다시 해 오세요. 그냥 이것 통과시켜 주면 한다고 하지 마시고 FTA 피해 농어업인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재 설계 해 오세요. 이것 가지고는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네 가지 정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4쪽 보면 계속 반복되는데 ‘수혜기업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예측이 어려운가 하고 연구 실적을 쭉 찾아보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들에 어느 정도 수혜가 되고 수혜기업 범위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던데 농식품부만 수혜기업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첫 번째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왜 수혜기업 범위를 측정을 못 합니까? 저는 측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책연구기관의 것도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대통령께서 X에 1조 나머지 전부 다 국가재정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3000억 외에 1조 원 못 맞춰 준 것 국가가 신뢰를, CPTPP까지 연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10년 연장하면 10년 동안에 한 7000억 원 정도를, 처음에 한 2000억 넣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내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지금 저희들……

○신장식 위원 제가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1조를 정부재정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정부재정 계획이 있어야 기업도 수혜기업 범위가 확정이 되고 거기서 돈을 더 내든 말든, 이 법률안도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부재정이 들어가니까 공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재정 부분은 공개하고 기업으로부터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금한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는 건지에 대한 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한 6700억 원가량이 정부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농어민 숫자 이런 게 아니고 다 지정기부 하면서 특정 지역, 특정 사람·기관에 집중됐고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그냥 공개된 자료만 봐도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6700억이 들어가면 정부재정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재단에 여전히 맡겨 놓고 집행내역만 공개해서 공개된 것으로 그렇게 돈이 쓰이는 게 맞나요? 집행 자체를 정부가 컨트롤하거나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네 가지 질문드렸는데요.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지금 현재 수정안이 나와 있고요.

○신장식 위원 대통령령으로 수혜기업 범위 정하겠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1조 원을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모자란 약 7000억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 넣겠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업의 영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한적이었는데 대·중소기업·협력재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전체 다는 해소가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 일단 저희들 생각이고 그래서 관련 법이 이번에 수정의견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예산과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부재원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고 집행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별도 정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기구를 대·중소·협력재단 내에 만들어서 정부 재원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소상히 보고드리는 체계를 갖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대통령님 X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 원을 채워 드리기로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기업한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임미애 위원 아까 얘기한 부분, 3000억 원은 했고 7000억 부족한 것을 하겠다고요.

○신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 원을 채워 드리기로 했다’, 그러면 기업한테는 얼마를 걷고 정부재정은 얼마를 넣을 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이게 올해까지, 지난 10년간 3000억밖에 못 걷었기 때문에 7000억은 지난 10년간 1조 원 조성하기로 했던……

○**신장식 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지금 못 걷은, 1조 원에서 모자란 게 한 67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대략 7000억인데 6700억을 정부재정으로 다 하는 건지 정부재정은 얼마가 들어가고 수혜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셨으면 수혜기업한테는 얼마를 걷겠다는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 모자란 7000억은 정부가 다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협력재단에다가 왜 이것을 맡겨서, 제대로 공개도 못 하는 거기다 맡겨서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걷는 것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적이지만 정부가 새롭게 출연한 7000억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내역이라든가 사용 집행내역 이런 것을 다 공개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신장식 위원** 재단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어쨌든 집행 주체는 재단이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신장식 위원** 잘 감시하고 잘 계획을 세우겠지만 집행 주체를 기존에 해 왔던 재단에다가 두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재단 내에 별도로……

○**신장식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부 돈이 6700억이 들어가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게 관할하는 부처가 농림부가 아니잖아요. 재단 정관이나 이런 게 중기부 아닌가요?

○**신장식 위원**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운영이나 쓰임새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농림식품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부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것처럼 별도의 관리기구를 두어서 우리가 이것 관리하겠다고 말하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해하거나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농림식품부에서는 이 재단의 정관 인가권이나 내지는 운영과 관련해서 지도 혹은 운영에 대한 권한을 농림식품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해수부와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늘 의혹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그 근본적인 고민은 이 기구가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고민이었는데요. 왜 중소기업부, 그 당시에 산업부에 뒀냐 하면 돈을 내는 주체들이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으로부터 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당시에 산업부 밑에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만 답을 수 있는 주머니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을 주머니로 활용할 뿐이지 나머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토론을 충분히…… 지금 차관님이 신장식 위원이나 임미애 위원님이 얘기하는 맥을 자꾸 피하고 있어요.

기금 조성 목적이 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기금이 제대로 건히지도 않고 쓰이는 것도 불명확하게 쓰여서 이 기금의 효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엑스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갑자기 그러면 그 기금을 정부예산으로 다 대겠다. 그러면 정부예산으로 대면 기금 건는 데도 지금까지 역할을 못 하고 쓰는 데도 불투명했던 그 재단에, 그것도 지금 농림부 산하 재단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기업들과 소통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정부가 예산 한 것을 FTA 피해 농업인을 위해서 쓰겠다. 그 재단의 목적, 정부가 예산을 거기다 기금으로 넣는 목적에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운용한 것도 잘못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별도 계정을 두든 안 두든 그 재단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위원들은.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계속 그걸 별도로 해서 어떻게 잘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쓰여지겠습니까? 그 재단이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제가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하신 내용,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 볼게요.

일단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기금 출연에 한계가 있다고 자꾸 농식품부가 이야기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입법 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혜기업을 지정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기부금품법인가요, 거기 저축이 되니 일단 의무 부과는 못 하지만 노력 의무를 부과해서 기금 출연에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법이 돼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수혜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문제 제기됐던 내용 또 농식품부가 견지했던 내용은 입법적으로 해결해 가겠다 이렇게 지금 치유가 돼 있는 거고.

또 일단 그동안에 이런 이유 때문에 기부가 저조해서 원래 내년 1월 16일까지 1조를 걷도록 돼 있고 한시법으로 돼 있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결손된 약 7000억 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부가 출연해서 기금과 관련된 미출연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10년 한시법이니까 1월 16일까지 돼야 되는데 이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10년 한시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는 출연적인 측면에서는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연도별 출연 내용이 3:3:2:2인가요, 2:2:2:1? 지금 연도별로 얼마씩 하도록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4년에 걸쳐서 2000·2000·2000·1000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렇게 해서 7000을 출연하겠다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필요한 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도 선언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2000억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위원회 운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왜 이 내용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되고 기업이 출연해 가지고 사실은 짬짜미하고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그동안 입법적인 내용에서 그 부분을 강제할 내용이 없어서 여러 가지 운용과 관련된 내용이 한계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거지요? 하나는 몇 조더라, 18조의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8조의4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18조의4에 현황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서 현재 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훨씬 강화하고 특히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한계였는데 지정 여부까지 공개하도록 해서 앞으로 기업이 출연할 때 출연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대신에 지금 현재 재단이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연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내용과 관련된 지출 목적이나 지출 방법이나 지출 기타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위원회, 정부가 개입하는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출연금이니만큼. 그래서 원래 FTA법에 부합되도록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계산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게 한시법에 1월 16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이 법을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4년에 걸쳐서 정부가 출연하는 금액도 집행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지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예전에 지적했던 수혜기업과 관련된 출연되는 내용 그다음에 공개의 한계 또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재단이 공개를 제대로 해서 실제 FTA 목적에 맞는 농어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틀을 바꾸는 방안 이런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지금 반영돼 있다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먼저……

○**임미애 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걸 사실 중기부에 둔 것은 처음에 모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기업이 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은 그러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걸 10년을 운용해 보면서 실제로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협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이것을 쓰는 곳이 자기들의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FTA로 피해를 본 농어촌지역의 교육이든 장학사업이든 문화사업이든 이런 데 쓰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사실 특별하게 기금에 협력해야 할 의지나 동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정부가 채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거 10년 동안 보여 줬던 기업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라면 어차피 정부가 채워 줄 터인데 기업이 기금 조성에 더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관리 주체를 옮겨 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에 정부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서 권한에 대해서는 중기부 밑으로 두어서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식으로 기금이 운용되게 하는 것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농식품부가 기금 자체를 옮겨 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중기부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일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기업체들이 출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농민과의 약속, 농어민과의 신뢰 문제 때문에라도, 이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권고였고 해서 정부가 농어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진일보한 잘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관리도 못 하는데다가, 예를 들면 6700억을 줬을 때 그 6700억을 가지고 실제로 농어민들한테 매년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갈지 대충 그려지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안 드니 농림부가 총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리권을 이관받든지, 정부가 출연한 부분만큼은 농림부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과연 실질적으로 농어민들한테 얼마나…… 그동안에 농어민한테 그쪽에서 기금 출연하는 게, 제공이 되는 게 제대로, 저희들이 분석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어떤 사업에서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6700억이라는 예산을 출연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 것이냐. 아무리 공개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일단 사업 배정부터 어떻게 될지도 확신이 안 서고 자신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관리권을 농림부가 또는 해수부가 함께 가져와야 된다 지금 그런 취지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제가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이 기금 조성하면서 당초 약속했던 1조 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대·중소

기업협력재단에 농어업협력기금으로 내는 경우에는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별도로 회계상  
은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출연 기업에 대해서도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별도 프로그램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혜택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로 공기업 중심으로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별도로 할 경우에는, 이 기금의 원래 목적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  
준이었는데 만약에 농식품부가 중앙정부의 예산에 기해서 별도로 기금을 운용한다면 지  
금 현재 다소 부족하지만 3000억을 걷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간의 참여를, 앞으로 10년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하지만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법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회라든가  
이런 데 기부금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조항도 현재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기부금 금  
지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기업으로 기부금을 걷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어떤 기업에 기부금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  
고요.

○문금주 위원 그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얼마나 받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다행히 저희들이 한 300억 건다가 작년에는 조금  
해서 한 400억 정도로 늘어났고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사업 내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  
시지만 예산은 사업 집행이 굉장히 경직적이고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데 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의 요구사항이  
라든가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  
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민단체라든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차관님, 검토자료에 보니까 수정의견에 제한적 정부 출연이라고 돼 있는  
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까지는 현행법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  
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는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개호 위원 그래서 2027년 1월 16일까지만 제한적으로 출연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어차피 출연을 하려면 계속 출연을 하든지 제도화를  
하는 게 옳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정  
부가 출연한다고 한 순간 기업의 참여가 아마 극히 저조하게 될 겁니다.

○이개호 위원 지금도 어차피 기업 참여는 거의 안 되는데, 안 된다는 건 좀 표현이 지  
나칩니다마는 우리 기대, 그러니까 2014년에 대중소 상생기금 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  
로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2004년에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본격화

된 것은 2014년 이후인데 그때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출연을 어느 정도로 규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농림부는 계속해서 정부출연 여지를 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당시 기재부가 반대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끌어온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업들의 참여는 거의 기대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정부의 간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2027년까지 미달분에 대해서 제한적 정부출연을 하자고 의견을 내셨다면 저는 차제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정부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도 만들고 사용 내역 공개도 하고 성과분석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정부출연 제도화는 차제에 반드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밑에 보니까 저도 보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수혜기업의 대표 단체 또는 협회가 소속 기업에 출연을 협조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표 단체, 그러니까 수혜기업의 대표 단체나 협회가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똑같은 초록은 동색인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직접 촉구를 하고 또 출연액을 공시하는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기부금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돼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재단은 정부가 아닌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재단은 현재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한적인데 이번에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이개호 위원** 아니,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아니고 재단이 촉구도 하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종합해서 공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기부금품법에서 금지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개호 위원** 저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표 단체나 협회에 맡겨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괜히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협력재단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협

력재단이 촉구하고 연말이 됐든 분기가 됐든 수혜기업들의 출연 내역을 공개해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는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개호 위원 적극 공감만 하지 마시고 공감을 하면 하면 돼. 하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다른 법률하고 타 부처하고도 협력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필요하면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좀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목표액이 바뀌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안 바뀌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차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한적 정부출연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전에 이 기금 조성에는 정부가 출연할 근거가 없었던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출연이라는 건 지금 부족했던 목표액을 정부가 채워 주겠다고,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것이 유효한 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하자, 법 시행 후. 그러니까 27년이니까 37년까지로 연장하자 이 소리인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한적 출연이라는 게 정부가 미달된 목표액을 채워 줄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면 기업이 이것을 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조성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27년까지 1조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러니까 1조를 못 채웠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채우고……

○임미애 위원 정부가 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다음에 27년부터 37년까지는 또 민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매년 1000억을 걷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목표액에 대한 얘기가 여기 법안에 없어요. 목표액이 수정되는 얘기가 있나요?

○신장식 위원 제가 연관해서……

수정의견안 20쪽 보면 ‘정부 출연에 관한 특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쪽, 수정의견안 ‘제2조(정부 출연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게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인 거지요? 그것은 ‘2027년 1월 16일까지 발생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 미달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목표 미달분……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 2027년 1월 16일까지 어쨌든 민간에서 돈을 열심히 거둬, 지금은 정부가 출연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1조 목표에 미달한…… 지금 한 3200억 거뒀는데 한 100억이라도 1월 16일까지 거뒀다 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1조 원 사이의 차액은 전부 다 정부가 출연한다 이런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기업이 돈 낼 의미가 있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니, 그래서 아까 위원님……

○임미애 위원 목표액이 없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목표액에 대한 조정이 없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목표액은 지금 현재 현행법 18조의2 4항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수석전문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된 게 제18조의2를 보시면 2항에 매년 1000억씩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 기간이 10년이 더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1조 원을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계서 말씀하시는 것은 27년까지의 1조 원이고 또 차관님 말씀하신 나머지 1조 원은 27년에서 37년으로 연장되는 그 1조 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면 전체 목표가 2조가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면 그렇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또 목표 미달하면 법 바뀌 가지고 정부가 출연 또 해야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짚으려고 그랬는데,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는 법이 이대로 개정이 되면 총 2조 원을 조성하는 목표가 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앞에 1조 원 목표 중에 지금 모자란 것은 이번에 메꿔 줄 것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새로 연장되는 10년 동안은 매년 기업으로부터 1000억을 받겠다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나마 보완하는 게 관련 협회 단체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정도인데 위원님들 걱정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모아졌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성범 위원** 그러면 예상컨대 10년 후에는 지금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정부가 그거 메꿔야 된다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뻔히 보이는 얘기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 거라서……

오늘 대통령께서 X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향후에 FTA로 인해서 수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서라도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 지금은 자발적인, 자발성에 기초한 출연인데 부담금으로 상당히 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이렇게까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움직이셔야지요.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출연하는 6700여억 원이 되면 이게 실제로 농어민들이 필요한 데 쓰이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더 많이 지금 하고 계신데 법에 보면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둔다’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 주셔야 돼요. 이관을 해 오든지 그것도 도저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안 되겠으면 최소한 현재 있는 재단 내에서 이 6700억은 엉뚱하게 쓰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농어민을 위해서 쓰이겠다고 하는 그 거버넌스 체계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법에 한 줄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집행 구조 점검 체계를 보여 주셔야 그나마라도 위원님들이 일부 수긍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관계 부처하고 어느 정도까지 의논이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두 번째 질문드리면 예산처, 해수부, 우리 부, 농어민 단체하고 이 상황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원회 별도로 구성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사용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법에 현재 예산으로 하기 힘든 6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해서 할 거고요.

○**김성범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고 원론적으로 지금 합의만 했다는 말씀인데 그 구조가 최종적으로 농어민들의 수요에 맞는 쪽으로 이 기금이 집행되겠느냐라고 하는 데에 의구심이 많으신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성범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위원회 안에서라도 농림부하고 해수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합의해서 보여 주셔야 된단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질문 주신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

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강제, 약간 준조세적인 성격으로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게 현실이었구요. 그래서 기업들은 여러 가지 기업의 이익이 났을 때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수혜기업을 좀 더 특징화시키고 목표액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부분은 현재 연구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지금 김성범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출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예산처하고 농민단체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게 지금 차관이 이 엄청난 기금의 성격이 변하는 속에서 하실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믿어 달라? 아니, 정부가 지금 민간에서 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FTA 피해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왜곡되어서, 그러니까 또 부진해서 정부가 그 6700억 절대 예산을 더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충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테니 걱정 마시라. 이게 차관이 답변하실 건 아니지요. 그것을 제도화해 오라니까요.

어떤 형태로, 법안에 나오든 시행령으로 한다면 이 기금 운용의 성격 범위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갖고 와서, 지금 수도 없이 여러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데 그냥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다로만 가지고는 이것을 저희가 공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만들어 오세요. 저는 이거 이렇게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18조의2제7항에 규정은 돼 있는데 이게 재단 내에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둔다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너무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룬을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범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그 내용에 대한 우려가 좀 덜어질 수 있나요?

○문금주 위원 최소한 시행령 정도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이후에 대통령령 보고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예측 가능하게 구체화해서 실제 위원님들이 구상하고 계시는 방향으로 본부나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틀을 잡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내용예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둔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범 위원 위원장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에 취지, 위당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어민들의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본부가 구성돼야 된다고 하는 그 취지가 조금 들어가면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해야지 그냥 위임만 해 버리면 나중에 부처 간에 의견 조율할 때 농림부와 해수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고 실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

럼 재단 자체를 농식품부 소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뭐가 필요하지요?

이 앞에다가 ‘농식품부 산하에’ 이렇게 워딩을 넣으면 되나요? 재단을 둔다 했는데 일견 보면…… 아니, FTA법 자체가 농식품부 소관 법이잖아요. 소관 법인데 재단의 소속이 중기부 소속으로 돼 있다는 명문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수석입니다. 법에 중소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때문에……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인가 규정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조 1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농어업협력재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지금은 그 내용대로 한정적으로 하더라도 재단 자체의 소속을 농식품부 소속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후에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2016년에 제가 이 농어촌상생기금법을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사실은 발의했던 법에는 농어촌상생기금재단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잘 되다가 막판에 기재부 반대로 결국은 대·중소협력기금으로…… 아니, 재단에 상생기금이 편입이 돼서 처리가 되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별도 재단을 구성할 수 있었으면 훨씬 실효성을 높일 수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런 점이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농어촌상생기금재단을 별도로 만들겠다 이런 시도를 할 수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농어촌상생기금재단을 만들자는 게 농식품부의 부처 의견이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취지도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당시의 관련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니까 당시에 그런 논의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있었는데……

○이개호 위원 논의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됐었거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있었는데 과연 농식품부 주관으로 했을 때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거냐가 그때 당시의 가장 큰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두면 아무래도 대기업·중소기업·농어업인 상생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런 입법례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출연에 의한 기금 모금 방법을 택했을 경우에 목표액에 미달할 때 비율을 정해 가지고 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연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법례가 지금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인데 보통 300억이 된다고 하니까 한 700억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700억을 전부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50%든지 70%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를 정부 출연 의무화하는 거기까지를, 물론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그

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정도를 비율을 정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런 기금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확인 한번 해 보고 그런 예가 있으면 우리 상생기금도 그런 노력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재단이 지금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때문에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준강제력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그와 함께 출연액을 일정 기간 기준으로 해서 공개하고 공시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게 지금 현재 기부금품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아니, 공개하는 것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 기부했는데, 출연했는데 어느 정도 출연했다는 것을 공개하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기업이 현행……

○**이개호 위원**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보면 강제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 번 제가 개정안을 내 본 적이 있어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력재단에서 출연 내역을 공개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압박수단이지만 공개하는 것 자체는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세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필요하면 일정한 정도의 준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자,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차관님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면 기업별로 기부금품 출연한 거 이게 기부금품모집금지법상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8조의3제3호에 그렇게 해 놔놓아요, 공개하도록. 그래서 민간기업 등의 당해연도 상생기금 출연금액에서 지정 출연 여부를 포함해서 세부 사용 현황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입법이 되면 공개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추진된 내용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대기업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입법적인 내용에서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사실은 운용 과정에서 걱정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안의 골자는 일단 기금 조성의 주체에서 정부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도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그것 하나하고 기금 운용이 10년이었는데 이것을 20년으로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운용상의 여러 가지 장치들은 법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법안을 오늘 처리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처리 이후에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가 이후에 농해수위에서 점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리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말씀하시지요.

○이양수 위원 지금 1조를 모으기로 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가 출연을 하기로 했어요, 정부 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중기부에 있는 재단에서 그걸 알아서 써요. 정부 예산을 차라리 농림부에서 받아 가지고 농민한테 쓰면 좋은데 그것을 중기부에 있는 재단에 정부 돈을 쥐 가지고 어떻게 쓰이는지, 농민들한테 쓰이는지 누구한테 쓰이는지 모르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10년을 더 연장해요. 그러면 10년 뒤에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또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10년 늘리는 것, 사실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10년간 1조 원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했는데 이걸 지금 2배로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부와 의원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어느 기업과 누구와 뭐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을 늘려서, FTA나 계속해서 농민들이 피해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혜 기업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거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정부 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그럴 거면 6700억, 그러니까 7000억, 7000억, 20년 동안 1조 4000억을 그냥 농림부한테 달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쓰는 게 맞는 거지요.

농민한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돈을 왜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 달라고 그래 가지고 중기부한테 줘서 그렇게 하나 이거예요.

지금 오늘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건지, 농림부 자체만으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총리하고 상의하고 청와대하고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재단의 권한을 농림부로 이관해 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 국무조정 그런 회의를 좀 하고 노력을 하고 정부출연이, 6700억에 추가로 되는 이 돈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쓰인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1조가 추가로 더 건히는데 그중에 정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돈들이 농민들한테 제대로 쓰인다는 게 확정이 돼야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그냥 잘 되겠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동안은 돈이 계속 이상한 데로 흘러서 쓰게 만드는, 정말 농민들한테 좋게 쓰여지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그런, 국민 세금을 그냥 막 쓰는 그런 전형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방향이 잡힌 다음에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우선 시급한 게 2027년까지로 돼 있는 한시법이거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한시법입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그걸 연장하는 것은 오늘 결정을 하고 나머지 사안은 오늘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한번 더 논의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진지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은 한시법이니까 시급히 처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법안에 담긴 취지는 일단 두 가지지요. 일단 민간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냐. 이게 그동안에 3000억에 그쳤다고 하는 내용은 기부금품금지법에 따른 제약 때문에 늘상 매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앵벌이 비슷하게 촉구해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일정부문 충당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별로 거기에 관련된 단체도 노력하도록 하고 기업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서 노력하도록 해서, 실제 해도 늘 지적하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일단 입법적으로 보완했다 하는 점에 예전보다는 나아진 점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정부조차도 손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전에 합의할 때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해서 7000억과 관련해서 10년 동안 정부가 사실상 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이 법이 제정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과연 기금이 실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입법적인 내용 가지고는 재단이 법 취지가 있으니까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들이 지정기부를 하니까 그것 공개도 못 하고 째짜미가 돼 가지고 사실상 농민한테 왔는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7000억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공개도 하고 실제 민간이 하는 것도 공개하고 정부가 하는 내용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여기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하고 관련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기존의 재단을 우리한테 가져오지 못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 부분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농식품부가 그 부분에 관련된 입법적인 내용을 충분히 상의해서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도 하고 방향도 정하고 실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도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만족스럽게 다 치유는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치유하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한시법이니만큼 처리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규범적인 내용은 정리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기부금품법을 보완해 가지고 출연을 확실히 늘린다든지 또는 재단 소속 자체를 우리한테 넘길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은 타 입법적인 내용이 수반돼야 되니까 그 내용은 이후에 정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걸 다음 해 1월 16일, 처리해야 될 한시법이니만큼 오늘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정리를 열심히 해 주셨지만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이 기금이, 당초 1조 원을 상생기금으로 민간기업으로부터 조성을 해 오던 것이 나머지 6700억을 정부가 예산으로 충당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기금의 성격도 바뀌어 버리는데 이것을 기존 재단에 그저 별도 운영위원회를 뒀서 할 수 있다 하는 조항 하나만 가지고 예산 출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재단 자체가 중기부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농림부에서, 해수부에서 관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정부가 기금출연, 그러니까 기금운용기간을 연장하고 정부가 출연하는 것이 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인데 그 주요 내용이 기존 법하고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아까 이양수 위원, 임미애 위원, 신장식 위원, 김성범 위원, 이개호 위원 지적한 것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장께서 자꾸 기존대로 그냥 가고 보완하자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강승규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한중 FTA로 여야정 합의할 때 어떤 취지였냐면 민간에 자발적으로,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 못 할 경우에는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 준다는 게 사실 그때 당시의 여야 합의문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출연하게 되면 민간의 자발성이 위축될 거다 해서 정부가 출연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민간으로 붓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출연해서 부족분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법을 바꾸고 그 근거를 해서 내년부터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일차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면 운용 주체를 바꿔 줘야지요. 지난번에 중기부에서 하려고 했으면 그것은 기금조성에 민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면 지금 결국 그게 실패를 해서 운용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되고 그래서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면 운용 주체를 바꿔 줘야지요. 임미애 위원이 주장하시는 건 전적으로 그런 내용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그래서 여기 법에,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운영본부하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회계를 별도로 구분해서 이것은 오롯이 농업에만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현재 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신장식 위원 저 질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도 있잖아요. 여기는 1조 944억 원, 누적기금이 26년 6월까지 그렇네요. 보니까 정부출연금도 압도적으로 많은가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aT에 위탁해서 운영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신장식 위원 이것을 aT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임미애 위원 지금 이 기금을?

○신장식 위원 예, 이 기금은.

○임미애 위원 돈 내는 주체가 기업이어 가지고 그랬다는 거지.

○신장식 위원 아니, 지금 사실 이게 주체가 달라졌으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신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입법적인 내용이어서 우리 법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은 이후에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사실 법의 목적상 상생기금과 관련된 협력기금 자체는 농어업인 등 이쪽에 쓰도록 돼 있지요? 목적은 명확하게 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기금 자체는 별도 회계 관리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 내용상으로 보면 그동안 공개 안 해 가지고 째짜미하는 것 이것도 완화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지정 여부까지 공개하도록 해서 지정해 가지고 그동안 적게 출연했던 내용을 우리가 늘릴 수 있도록 해 놔고 째짜미하는 것도 완화될 수 있도록 틀을 일단 공개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것도 정리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부 출연하는 것은 별도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은, 예전에 했던 불신을 우리가 해소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다 정하면, 그렇게 틀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성과보고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놔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10년 동안 잘못 운영돼 왔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열추 잡혀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입법적으로 넘어야 될 고비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못 넘었지만 잡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입법적으로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 위원입니다.

차관님, 운용 주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승규 위원님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임미애 위원님 말씀 주시는데 이게 처음 법안 시행이 될 때 여야정 협의체에서 당시에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산업부에서 이 법을 관장하지 않았나요, 그 재단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때는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문금주 위원 그런데 그게 중기부가 생기면서 중기부로 넘어갔는데 중기부로 가면 이 기금, 여러분들 앞으로 대기업한테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중기부가 힘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는 운용 주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토하신 김에 농림부에서 가져올 수는 없는 건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저는 이 법안 물론 빨리 통과는 해야 되겠지만 통과보다는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을 할 거고 어떻게 우리가 기금을 더 많이 기업들한테 출연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연장해 놓고 또 정부 출연 근거 마련해 놓으면 기업들 안 읍

니다. 그동안 해 온 바로는 안 오는 거고 여러분들만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정부 예산으로 계속, 국민 예산으로 할 겁니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제가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의 자발성에 기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편익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 정부가 거의 준조세에 가깝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현재 기업 관련해서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FTA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평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을 본다면 거기에 따른 이익을 평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FTA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기업이 이익을 본다면 그 이익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틀에 기준 해서 일정 부분, 예전에 말씀하셨던 무역이득공유제까지는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의 명칭을 사용해서 기업이 상당 부분의 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게 용역이 언제 마무리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언제 발주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난 6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그것 빨리 해 가지고 정기국회 마지막에 처리하면 되겠네요.

지금 문금주 위원 얘기에 제가 또 하나만 보태면 이렇습니다. 기금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금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운용 주체는 나중에 고민한다 이걸 맞지 않아요. 이 법을 연장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가려면 운용 주체, 운용의 성격, 기금의 조성 성격이 바뀌는 만큼 운용 주체도 바뀌어야 되고 그때 농림부 소관으로 가져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 법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주체를 해 달라? 안 돼요. 기재부에서 그런 것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지금 이 논의를 이렇게 할 때 운용 주체도 같이 고민해서……

그리고 만약에 기업에서 그런 이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할지 이런 부분들 용역을 하고 있다면 그 용역을, 대략 용역이 7월 달에 시작했으면 지금 벌써 다 나왔지요. 중간보고 하면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 줘서 같이 통과돼야 되지.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미애 위원님 하십시오.

○**김성범 위원** 저는 위원장님 정리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이걸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우려들이 많으시니 지금 법에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둔다’라고만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금 주체를 갖고 오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에 따른 재단이 설립돼 있고 그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단은 그 법에 따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단 자체를 손댈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쪽 소관이고.

다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누가 관리·운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관리·운용하면서 돈을 받고 쓸 수 있는 재단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농림부 소관 재단 중에서 그래도 성격이 비슷한 데에 이 기능을 주면 돼요. 이것은 둘 다, 저쪽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 법도 개정해야 되는 입법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왜냐하면 관계부처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한시법이고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만큼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희가 사실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부족한 부분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내비쳐도 이 법에 의하면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조성주체가 정부 외의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 줘야 정부도 부족한 부분을 출연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출연되어야 운용 주체의 이관에 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법이 이 개정안이다, 그리고 사용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것이 이 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운용 주체의 이관 문제나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안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 1시간 넘게 동안 걱정하고 지적했던 문제들이 다시 논의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리가 빠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 또 얘기해요? 반대하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요, 반대를 명확히 다시 더……

○소위원장 윤준병 하려면 하시고요.

○강승규 위원 이 법이 만들어지고 기금이 조성된 목적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들의 피해를 어떻게든지 보전해야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FTA가 체결돼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 지난 10년 동안 기금이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고 조성된 삼천몇백억이라는 것도 어디에 쓰였는지, 실질적으로 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쓰여졌는지 모른다, 제가 이걸 한마디로 하면 농민들은 속았다 이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CPTPP를 체결해야 된다는 정부 입장이 강조되면서 이 법에 대해서 그동안 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제대로 안 됐으니 정부가 돈을 대겠다, 그러니 이 법을 우선 개정해 놓자, 그러고 우리는 CPTPP를 하겠다 하는 의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농민들은 또 속는 거예요. 1조, 2조 구성한다고 해 놓고 정부 예산도

그리고 이쪽에다 쓸 것 저쪽 주머니에다 넣어 놓고 그걸 FTA 피해 농민들에게 쓸지 안 쓸지…… 결국 또 하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데 명분으로 사용된 이 법이 정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개정돼서 개정돼도 CPTPP 됐다, 피해 농민은 이제 이걸로 조금이라도 보전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이 법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차관님, 지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CPTPP가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가 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관시킬 사항은 아닌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방금 전에 임피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동안의 기금 조성 목표액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 부분을 수익 기업체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 출연을 통해서 해소시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용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뭔가 있는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저는 오히려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은 우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기업에서 매년 한 300여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의구심을 많이 주셨는데 개별적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얼마나 어느 지역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 하지만 현재 관련 조항에 따라서 6개 분야의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집행돼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때 무조건 기업에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만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출연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이 6개 범주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느냐를 봅니다. 보고 그 사업을 받고 하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상당히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차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국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 차관님들이 알아서 잘 보고 있으니까 국회에다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심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뭐 하러 있어요? 정부가 그런 걸 잘 감시하는지 국회가 내용을 보고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안심하라 그런 얘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김용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잘 들었고요. 저는 강승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한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자면 협회를 통한 출연 협조 요청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기업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번에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태 위원** 수혜기업들이 돈을 내는 것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수혜기업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의견 교환도 없이 이렇게 법부터 바로 만드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충분히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은 좀 시기상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수시로 출연기업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기업들에게 출연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출연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 차관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이것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들어가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000억 들어갔습니다.

○**문금주 위원** 2000억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기재부가 근거도 없이 해 주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들께서 법 통과를 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기재부가 언제부터?

○**소위원장 윤준병** 이 부분은 좀 이론이 있으니까 보류했다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래도 오전에 했는데 한 건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신장식 위원** 한 가지만 부탁……

○**소위원장 윤준병** 예.

○**신장식 위원** 혹시 운영위원회 관리체계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은 안 돼 있던데 그 부분을 잘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초안이라도 대통령령을 좀 보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신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아까 얘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내용을 넣자고는 해 봤으니까요……

○**신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내용 보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라는 게 없어서…… 어쨌든 간에 위임의 근거를 분명히 해 주시고 위임의 범위도 크게, 위임의 범위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 시행령을 초안이라도 보면 좋겠다, 어차피 통과가 안 됐으

니까요.

○**임미애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만 보태면 김용태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도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농식품부에서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최종 가결할 건지 여부는 조금 이따 위원회,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좀 쉬운 것 하겠습니다.

**2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5)

**24.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24)

**2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8)

(11시35분)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3건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심사자료 4권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은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품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양수인 보호를 위해서 행정처분 확인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농약등을 판매하거나 수출입식품방제업자등이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구매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수집·관리 대상을 농약에서 농약등으로 확대하고 제2호의 관리대상에 등록신청서류를, 제4호의 정보제공 사항에 유해성을 각각 추가하는 한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업무에 농약등의 취급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공표를 추가하고 수집된 정보의 사용·활용·제공 용도에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확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은 품목·원제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제재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재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등 합리적으로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 부칙입니다.

서삼석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윤준병·박형수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윤준병 의원안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박형수 의원안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쪽입니다.

먼저 1.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의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신설하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양도인의 행정처분 전력과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2. 농약등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보존 사항 추가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농약 구매자와 직불금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생년월일, 성별에 대한 추가 필요와 법인정보 추가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3.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업무 범위 및 수집정보의 공개·이용 범위 확대 규정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범위 확대로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급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신설로 국민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변경신고·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규정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형벌 합리화 추진단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일괄 정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칙,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차관님, 4쪽의 구매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을 추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동일 명칭인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건 법인이건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목적이 뭐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일단은 농약을 누가 사 갔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구매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목적은 뭔가요? 그게 농약 본래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까 봐 그런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직불금의 수급 관련해서 이 정보를 실제로 쓰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쓰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정보 쓰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임미애 위원 안 씁니다. 제가 만약에 그 목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 목적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번에 사용하려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사용하시려고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부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공익직불금 자격검증 관련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실제로 직불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농약을 얼마치 샀는지를 확인하면 금방 되는 일을 그걸 하지 않았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공판장을 통해서 한 해 어느 만큼의 생산물을 공판장에 냈는지를 확인하면, 그거는 땅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실경작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경매장에 물건을 내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면 이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농식품부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 이 정보가 실제로 제대로 쓰이지 않을 거면 이거는 구매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판매자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 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제가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이름·주소·연락처만으로도, 이 세 정보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충분히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동명이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같은 주소, 같은 연락처의 동명이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생년월일·성별까지 해야 개인이 농약을 사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특정할 수 있나요? 현행 이름·주소·연락처만으로는 특정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오기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는 뒤에 걸 뭘 더해도 돼요.

○임미애 위원 카드 결제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신장식 위원** 아니, 저는 굳이 생년월일·성별까지 해야 개인이 특정이 되나 하는 질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입니다.

현재 개인의 성명·연락처·주소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소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정확한 자기 지번 주소까지는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성별과, 생년월일은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가 되니까 성명하고 생년월일을 바로 대조를 하는 게 보다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개인정보 등록은 최소화하면서 정보를 관리하고자 성별과 생년월일 정도를 추가하는 안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동의하시는 겁니까?

○**임미애 위원**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요?

○**임미애 위원** 이 정보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기존의 농약을 사가서 어떤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디서 누가 사 갔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라면 이게 아마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실경작자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이것이 쓰여지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여서 그 용도로 쓰이지 않는 거라면 이 정보 제공은 저는……

○**소위원장 윤준병** 안 하는 게 좋겠다.

○**임미애 위원**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되겠다.

○**신장식 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판례나 법의 취지를 놓고 보면 이건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거든요. 이름·주소·연락처만 해도 개인정보인데 여기에 생년월일과 성별이 있다면, 개인정보는 수집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관리자의 엄격한 관리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수집 범위만 늘리는 거는 개인정보의 양을 늘려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나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신장식 위원** 아니, 추가적으로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조문에 그게 나와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행법에 공익직불금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하려는 목적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른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에도 직불금 농약 사용 기준이, 사용 근거가 확인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게 입법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렇게 보시지요. 일단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고, 다만 지금 생년월일을 포함시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될 수 있다 이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활용을 어디다 하느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일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법에 보면 등록된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라든가 지금 개정안의 임업직불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와 통계 공개 등의 정보에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윤준병** 돼 있어서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다, 입법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신장식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신장식 위원 어디 있어요?

○임미애 위원 아니, 다른 법에……

○신장식 위원 다른 법에?

○임미애 위원 직불금법이나 이런 데……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아니, 이 법에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이 법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수집하려면 이 법에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범위가 뭘지 분명하게 있어야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돼 있는 거라서 어디 있는지……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현행법에도 이름·주소·연락처를 명기하도록 돼 있는데 생년월일과 성별이 굳이 포함되지 않아서 아까 공익직불금이든 지금 농약 관련 취급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타난 게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수요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다, 개인정보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공개하실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농업경영체 중에서 농업인들의 농약 구매 매칭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강승규 위원 떨어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정확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50% 수준만 매칭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23조의3 2항과 4항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3조의3 2항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은 1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4항은 ‘농촌진흥청장은 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3조의3 제1항제5호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개인정보의 보호나 공표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목적 범위가 딱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직불금 하는 데 사용해요, 목적 범위가 여기로 딱 지정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23조의3 1항 제5호에서는 지금 제외되고 있고요.

○신장식 위원 23조의3 제1항 5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예.

○신장식 위원 아니, 법체계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그리고 5항에도 농촌진흥청장은 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각호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농약 등의 안전관리.....

○신장식 위원 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직불제 활용과 관련되는 내용이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우려가 좀 해소되셨지요?

○임미애 위원 실제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심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4)

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7)

2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309)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심사자료 5권입니다.

1페이지 심사 경과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법률안 검토입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대림 의원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지정 등 타 행정행위로 전환 권고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벌칙 완화입니다.

문대림 의원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완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을 삭제하는 대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벌칙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종합 기준에 따른 형평성 검토를 선행하여 일괄 정비과제로 추진할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갱신심사 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갱신심사 결과가 우수하면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사업자의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체계가 존재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 부칙입니다.

부칙에 시행일,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적용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도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쪽입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환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사람·기업에 대한 대상이므로 지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벌칙 완화 규정입니다.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형벌 합리화 추진단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동 사항도 같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3.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15쪽입니다.

4. 갱신심사 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유효기간 확대 조항은 수용하겠습니다.

인증 갱신심사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6쪽입니다.

부칙,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경과조치와 다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태 위원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윤준병 예,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5년 기준으로 보니까 2725개가 인증이 됐고 취소된 것은 2건이네요. 그러니까 한 0.07% 정도 수준으로 취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이 업체들이 성실히 기준을 다 이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인증 요건, 저희가 지정할 때 인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해당 사업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는 실익이 뭔가요? 어떤 목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이유가 안 나와 있는데 이유는 그냥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정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사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증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저희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유사 입법 사례도 식품명 같은 경우에는 지정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인증과 지정의 가장 큰 실익은 인증은 권장 사업, 지정은 정책적·행정적 제한을 해야 될 경우 이렇게 제한적 운영이 필요할 경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증을 하다가 지정으로 바뀌면 실제로 융복합 사업자가 많이 줍니다.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준 충족과 함께 또 정책적 필요성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니까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왜 인증을 지정으로 바꾸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명확히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위원님 우려……

○이개호 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융복합 사업자는 계속 권장해야 되는 거 아

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 현실로 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지정 확대를 하려면 인증이 지정 확대에 걸맞은 제도지 지정은 상당한 정도의 규제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인증과 지정이 물론 두 개 다 준사법적 행정행위기 때문에 좀 비슷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증과 지정을 나누는 이유는, 그 근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제한적인데 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절차라든가 방법은 현재 인증 제도를 그대로 저희들이 운영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하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개호 위원**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게 필요하다니까 검토를 했겠지요. 그래서 인정을 하겠습니까마는 이 지정과 인증은 분명히 추구하는 목표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그것 판단 관련해서 만약에 동일인이 A 지역하고 B 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동일인이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일 법인이나 동일인이 지역을 달리해서, A 지역의 농산물의 어떤 그 자산을 활용을 해서,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재관 위원** 그런데 지정제로 하면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요? 동일인이 A 지역에서 하고 또 B 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인증과 지정이라고 하는 것에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인증 제도는 동일인이 A 지역에서, B 지역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걸 지정제로 바꾼다고 했을 때 A 지역과 B 지역을 지금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사례를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지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권장과 그런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게,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거는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7)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0)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1)

3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8)

### 3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85)

(14시24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3항까지 이상 5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심사자료 6권입니다.

1페이지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과징금 체납 징수 처분의 준용 규정 수정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은 과징금 체납 시 이를 징수하는 처분의 준용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세징수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법례에 따르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처분사실 공표 및 교육이수 명령의 기준시 변경 등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사실 공표 및 교육이수 명령의 기준시를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따른 처분의 확정시에서 처분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경태 의원안은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사실을 공표하는 홈페이지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처분사실 공표 기준시를 처분 확정시에서 처분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처분사실이 한 번 공표되면 추후 공표 사실이 정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명예·신용이 공표 이전의 상태로 충분하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페이지, 처분사실 공표 홈페이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홈페이지 추가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게 공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 신고 자료, 사업자등록 자료 등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및 과실범 처벌 규정 신설입니다.

안상훈 의원안은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여 제도 준수 유인을 증대시키는 취지입니다만 다만 유사 입법례 및 타 위반행위의 벌금형 상한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 과실범에 대한 처벌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따른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과실범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보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 과태료 상향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1페이지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및 원산지 표시 등의 공포에 관한 적용례에 대한 규정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했고 처분사실 공포는 김선교 의원안이 통과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먼저 2쪽입니다.

과징금 체납 징수 처분의 준용 규정 수정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용어 정비입니다.

4쪽입니다.

처분사실 공포 및 교육이수 명령의 기준시 변경 등 규정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공포할 경우 의견 제출 등 행정절차를 준수할 수 없다는 점, 처분 확정시를 기준으로 공포하는 다수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 중개 플랫폼에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규정은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현재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 등의 통관 기록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4,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및 과실범 처벌규정 신설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먼저 허위표시 처벌의 타 입법사례 비교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의 처벌은 상위 수준이고 상습범의 형량 가중 기준도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타 입법 비교 시 원산지는 법익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5,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규정입니다. 이거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현행 과태료 수준이 식품 유사 입법 사례보다 높고 2019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 기준에 따라 상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1쪽, 부칙 조항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있으십니까?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9항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9)**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4)**

(14시29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심사자료 7권입니다.

1쪽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법률안 검토입니다.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19년 약 3조 원에서 2025년 약 4조 원 규모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보건 목적의 효과를 지니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도 활용되는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기식품 법률에는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상태 농산물은 기능성을 가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건강기능식품에 미포함되고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기능성 표시·광고가 금지되는 대상에 해당되며 식품 등의 표

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부 농산물이 기능성 표시·광고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은 농업인 스스로 해당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표시·광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기능성 표시·광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대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기능성 표시·광고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성 농산물의 관리·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활성화와 시장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인체에 대한 보건 목적 효과를 추구하는 기능성 농산물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쪽, 조문별 검토입니다.

수정의견은 윤준병 의원안을 수정할 경우 입법 정책적으로 수용할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안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표시·광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능성 및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광고 기준, 기능성 농산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윤준병 의원안의 취지를 수용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능성입니다. 법적 통일성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정의를 인용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농산물입니다. 품종의 육성·개발 또는 개량 없이 생산된 농산물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능성 농산물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기능성 원료와 중복되는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기능성 농산물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의회가 품질관리, 농산물 표시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기준, 방법 및 실증을 규정하는 겁니다.

이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체계나 이중규제, 자구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농산물의 거짓표시 금지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권한 중복,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행정제재처분 위반 시 벌칙 규정입니다.

실증자료를 미제출한 자에 대한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기능성 표시 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시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양수인의 종전 행정제재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입니다.

박형수 의원안은 우수관리인증기관등의 지위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종전 행정제재처분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토요지입니다.

우수관리인증기관등의 지위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으나 선의의 양수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페이지 부칙입니다.

시행일과 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농식품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먼저 4쪽입니다.

먼저 제2조 정의, 기능성 및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4조 심의회의 직무에 기능성 농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5조의3 기능성 농산물 표시 기준의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29조 거짓표시 금지에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 행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30조의3항 기능성 농산물의 사후관리 조문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19조 벌칙 조항에 기능성 농산물 거짓표시 행위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수용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20조 벌칙 조항에 기능성 농산물의 시정명령 위반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 양수인의 종전 행정제재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부칙,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해당 법안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다만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식품표시광고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견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연상태 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령으로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규정상 자연상태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별도의 사후관리체계가 부재해서 자연상태 식품에 인위적으로 추가한 특정성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실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신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따로 말씀을 나눠 보거나 한 것은 없으시지요, 부처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도 이 법 자체가 25년도에 발의가 돼서 저희들이 여러 번 식약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법 취지가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만 현재 그 관련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위원 부처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취지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능성 농산물에 표시를 함으로써 R&D라든가 우수농산물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식약처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김용태 위원 부처는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식약처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수용 곤란 의견을 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려면 보통 식약처에서 소위에 출석을 해서 보다 명확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게 관행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오늘 오셨나요?

위원장님, 이렇게 사실상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위에 각 부처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처 관계관이 출석을 해서 나오셔서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실질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거든요, 의사 표시를. 저는 농식품부 뜻대로 안건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도 식약처에서 이 사안 사안에 대해서 다 수용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 온 만큼 한 번 더 숙성을 해서 식약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이렇게 꼭 법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개호 위원님은 처리하자는 입장이신데……

○이개호 위원 저는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처리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마 이 내용이 부처 간에 이런 입장에서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기능성 식품과 관련돼서 농식품부는 농산물에 관한 한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R&D와 관련된 내용들,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식약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사항이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니 이런 법을 제정해서 뒷받침해 주고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법사위 과정에서 부처 간에 의견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필요하다면 그쪽에 계류시켜 놓고라도 그러면 그쪽에 있는 법들을 개정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진작시켜 주면 이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식약처가 최소한도의 역할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전향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신장식 위원 질문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신장식 위원 이 정도 되면 식약처에서도 왔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왔나요? 식약처와 있나요? 이 정도면…… 식약처에서 왜 안 왔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알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다 드렸지요? 대변해주십사 하고……

○이개호 위원 그리고 법안들이 대부분 야당 위원님들 제출 법안이거든요. 야당 탄압이 예요, 이건 완전히.

○소위원장 윤준병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도 있는데 여기서 해서 농식품부 입장이 전달이 되면 아마 법사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을 개정해서 이렇게 뒷받침 하겠다 하는 내용이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에서는 의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35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장식 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장식 위원 이의를 명시해 주시지요, 납득이 안 가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오전 논의했던 안건 또 아까 확인하기로 한 안건 처리하고 다음 안건 하시지요.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관련해서 오전에 논의했고 농식품부의 기금 운용과 관련된 주도적인 역할 이걸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계셔서 거기 운영위원회, 운영본부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주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방안으로……

배부 좀 해 드리세요, 위원님들께.

그러면 아까 의사일정 26항에서 28항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 지정과 인증과 관련된 내용 확인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인증서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유효기간, 주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정제로 하더라도 두 장소에서 동일인 지정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정도 해서……

○임미애 위원 아까 질문한 게 그게 아니지 않나요? 만약에 같은 사업자가, 지정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능하냐 이렇게 묻지 않았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재관 위원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가능해야 되는 건가요?

○이재관 위원 예, 가능해야 돼요.

○소위원장 윤준병 효력적 범위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차관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정안 제7항, 제6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내에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본부를 둔다를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하여 농식품부가 통합적으로 운영기금에 대한 운용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7항, 제6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을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사용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3항에도 불구하고 재단 내에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둔다.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런데 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수정을 안 했구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대통령령보다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함으로써……

○소위원장 윤준병 농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것이 농식품부의 실질적인 운영이 담보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단 거기에 신고하고 등록된 재단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이 아니라 농식품부령으로 했을 때 법제처나 이런 데서 별도의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저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비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일단 위원님들께서……

○신장식 위원 돈은 기재부에서 나올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재단은 소관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고, 그런데 내부 운영위원회는 부령으로 정하고…… 이게 체계가 맞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지금 예산은 농식품부 예산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법에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를 별도로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운영위원회, 운영본부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세부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법체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식 위원 체계상 문제가 없다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조금 체계상……

○이개호 위원 부처 간 논란 또 서로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도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 농해수위는 농식품부 입장에서 판단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그런데 이게 재단 내에 별도의 운영위원회와 본부를 둔다고 돼 있던 말이에요. 밖에 두는 거면 여기서 정하면 돼요. 대통령령이든 시행령이든 부령이든 대강 하면 되는데 내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관리하는 재단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통상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 정도로 하는 게 맞고, 이 사안의 성격을 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할 거냐는 여기서 정한 대통령령은 우리 FTA 이행법의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가 안 만들고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령으로 하더라도 관계부처하고 협의 다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농림부가 여전히 시행……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안을 만들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어차피 농림부 주도로 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상…… 그다음에 이 재단이 우리 재단이면 관계가 없는데 저쪽 재단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조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여러 가지 체계에는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아니, 나 진짜 웃음밖에 안 나는데요. 이게 지금 맞아요? 법체계상 아까 맞다 그랬는데 차관님,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밑의 운영위원회와 운영본부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하고 별도로 둔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운영본부의 구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든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든 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야지 나중에 변동 가능성이 없지요. 아니, 중기부 산하에 있는 재단의 그 내부에 있는 운영위원회든 심의위원회든 거기에서 중기부장관이 어느 날 바뀌어 와 가지고 ‘저건 우리 부, 우리 재단 건데 왜 농식품부에서 자꾸 부령으로 저렇게 하나, 우리가 부 만들어’ 그렇게 하면 농림부하고 중기부하고 충돌이 나지요. 충돌, 서로 주장할 때 여기에서 한 것을 그냥 좋게 선의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 주면 모르지만 그쪽에서 ‘우리가 만든 기금 우리가 제대로 쓰게 주도권을 가지고 해’ 그러면 농식품부령이 그냥 무력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대통령령으로 해야 그나마 대통령 결재 난 거니까 그쪽 부, 장관이 탄소리 같은 것 안 하겠지요.

지금 일하기에는 농식품부령이 편하겠지요, 그냥 부에서 만들어서 부에서 해 버리면 되니까. 위에 국조실도 가야 되고 청와대도 가야 되고 귀찮겠지.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챙겨야 된다는 내용들이 강해서 일단 부령으로 하면 위원님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취지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시행령으로 해도 농식품부가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법률적 합성의 취지에 맞다고 하시니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1)

**37.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4)

**38.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2)

**39.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1)

**4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7)

**41.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56)

(14시56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6건의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심사자료 8권입니다.

먼저 2페이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자조금은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 중에 있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방식, 생산자, 유통과정 등이 상이함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소관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임에 따라 공적 역할 수행 및 거출금 납입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현재 거출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의무자조금·임의자조금으로 구분되며 임의자조금은 자립성이 저조합니다. 또한 재배면적 조절 등 수급조절 기능보다는 소비촉진, 홍보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농산자조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제정안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며 임의자조금 제도를 삭제하고 거출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자조금단체의 안정적 재원 마련 유도 및 무임승차 현상을 방지하고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고려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정안의 체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김선교·이만희·박덕흠 의원안은 제명을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송옥주·임미애 의원안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윤준병 의원안은 농산자조금 조성·운영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제명을 반영하고 육성의 대상은 자조금이 아닌 자조금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명을 농산자조금의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목적입니다.

김선교·이만희·박덕흠·윤준병·송옥주 의원안은 법률의 목적을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임미애 의원안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 및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 및 경쟁력 강화,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 취지가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자조금 조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 향상, 생산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미애 의원안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3쪽 정의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안은 농산자조금, 자조금단체, 농산물, 농업인 등 거출금과 같이 제정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1쪽입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윤준병 의원안으로 수용합니다.

자조금 조성·운영 중심에서 자조금단체 육성·발전 중심으로 보완하고 품목 대표 조직으로서의 자조금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제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목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부 자조금단체에서 목적 조항의 수급 안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 요청함에 따라 의견을 통해 자조금의 기능 중심으로 목적을 구체화하고 농산업으로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4쪽입니다.

정의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업인등 정의 규정에서 생산자단체 정의, 자조금단체 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3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쭙보면, 지금 현재는 농수산자조금을 관리하는 법률

이 있는데 농산을 빼면 나머지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는 수산자조금에 대한 것만 남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도 별도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해수부에서 수산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산자조금법은 별도로…… 이 내용 봐두면, 이 내용 개정 않고 그냥……

○**김성범 위원** 그러면 농산만 들어내면 나머지 가지고 그건 수산자조금법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3쪽, 제2장입니다.

먼저 가. 법인격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조금단체 설립은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자조금 설치와 운영 등은 농수산물 자조금법에 따르도록 하는 이원적 구조에 따른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법인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른 운영상 한계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4쪽, 나. 사업 범위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사업을 자조금 용도로 정한 사업과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과 달리 별도로 자조금단체의 사업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자조금단체의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5쪽, 설립준비협의회 및 설립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설립에 요구되는 인가절차와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송옥주 의원안은 설립의 사전절차로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일정한 수 이상의 발기인 또는 설립준비협의회가 정관 및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2쪽, 라입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자조금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자구조정 외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35쪽, 마. 회원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으로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아닌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참석하거나 대의원으로서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0쪽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고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제정안에서 추가적으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아니라 단체의 설립 제한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1쪽, 총회입니다.

제정안은 정관의 변경, 거출금의 산정기준, 사업계획 승인 및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인 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조금단체를 특수법인화하고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규정하여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합병·분할, 소집요건,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수정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8쪽 대의원회입니다.

제정안은 회원 수가 100명 또는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선교 의원안은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회원 수를 10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자조금단체 회원 수가 15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150명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격요건입니다.

자조금단체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의 선출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중 대의원이 선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임방식입니다.

제정안은 현행과는 달리 대의원회 설립에 요구되는 사항과 대의원의 자격·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부령과 대통령령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의결기구를 갈음하는 간접 의결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단체의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2쪽 자, 임원 및 이사회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는 한편 이 중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현재 이사회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구분된 집행 기능을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회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집행 기능을 단일화하여 자조금단체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나 공무원의 위원, 이사회 내 위원회, 체계·자구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자조금 운용·관리 및 평가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한 자조금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자조금단체가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집행·성

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운용·관리와 계획 승인 기한, 운용평가, 하위법령 위임, 법체계 등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생산·유통 자율조절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경작 및 출하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협력 대상과 사전협의, 대의원회 의결 등에 있어 약간의 수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70페이지, 자조금단체의 해산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를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또는 분할, 설립인가의 취소로 규정하고 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합병·분할, 총회 의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자조금단체의 청산 및 수납중지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에 준하여 거출금의 수납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박덕흠 의원안 제20조는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산인 예외, 청산인 결격사유, 수납중지 등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81쪽, 개선 등 조치명령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자조금단체 회원의 거출률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경과 시에는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치명령 기간과 거출률, 지자체장의 지원 중단에 대해서 수정했습니다.

86쪽, 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입니다.

이만희·박덕흠·윤준병·송옥주·임미애 의원안은 자조금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연합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필요성과 지원센터, 하위법령 위임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3쪽입니다. 법인격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의 사업 범위를 명확화, 확대하는 데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설립준비협의회 및 설립 관련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자조금단체 설립준비협의회와 28쪽, 29쪽에 있는 설립준비협의회 신설에 따라 설립인가 조항 자구 수정 및 절차 재구성, 발기인, 하위법령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32쪽입니다. 라, 정관의 기재사항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정관으로 정함으로써 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35쪽입니다. 회원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조금단체 회원을 구분하여 거출 대상과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자조금단체 설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 후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총회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합병·분할 조항은 삭제하고 총회 소집요건 규정 조항은 신설하는 데 동의합니다.

48쪽입니다. 아, 대의원회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총회·대의원회·이사회에 관한 사항에 따라 내부적으로 규정한 후 정관에 기재하는 데 동의합니다.

52쪽입니다. 자, 임원 및 이사회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사회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이원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이사회로 일원화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차, 자조금 운용·관리 및 평가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조금 운용계획은 자조금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하는 계획이므로 변경 시에도 이사회가 아닌 현행과 같이 총회 의결을 거치고 변경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이사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66쪽입니다. 카, 생산·유통 자율조절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 법인, 농협 등과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만 대의원회 의결 절차 조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70쪽입니다. 타, 자조금단체의 해산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합병·분할에 대한 총회 의결 사항 삭제에 따라 자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75쪽입니다. 자조금단체의 청산 및 수납중지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회장이 아닌 별도의 청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납중지에 따른 관련 규정 자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81쪽입니다. 하, 개선 등 조치명령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치명령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한 뒤 지자

체장이 출연 등을 중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데 동의합니다.

86쪽입니다. 거, 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신설에 동의합니다. 다만 연합회 사무국이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은 향후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탄력성, 효율성을 위해 삭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89쪽.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자조금의 조성 및 지역자조금입니다.

제정안은 하나의 농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는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의에 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출하 시기에 따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역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자조금 조성, 지역자조금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94쪽입니다. 출연·지원 및 자조금의 재원입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자조금지원 사업을 통하여 자조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자조금의 재원을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농산물의 생산·유통 등에 관련된 자의 지원금,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조금단체 육성을 위해 출연·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 외 사항은 현행법에 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자조금의 용도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의 사용 용도를 자율적 수급 안정, 생산·유통의 자율조절 이행, 소비촉진 및 홍보, 교육 및 정보 제공,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조사·연구, 거출률 제고를 위한 홍보 등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9쪽, 거출금의 산정 및 납부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거출금의 산정 기준을 회원별 경영 규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자조금단체 회원이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대납기관 등 거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산정 기준과 대납기관, 하위법령 위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등입니다.

제정안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한 사유와 제한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109페이지, 거출금의 수납위탁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농협·도매시장 등을 통한 출하 시에 정산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거나 회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은행 등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출금의 수납이 위탁되고 있습니다.

미납부 거출금의 징수 및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과오납금의 환급입니다.

제정안은 현행법에 준하여 자조금단체가 회원의 과오납금 환급 청구 시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고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과오납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자조금회계의 구분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윤준병·임미애 의원안은 회계를 거출금, 출연·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와 그 밖의 수입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중복계상과 회계구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118쪽, 공시입니다.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자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89쪽입니다. 자조금의 조성 및 지역자조금 조성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지역자조금의 별도 조문이 아닌 자조금 조성의 한 유형으로 분리하여 지역자조금을 육성하고 전국 자조금 조성이 최우선이나 지역 집중도가 높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 자조금 조성을 전제로 하여 한시적으로 지역 자조금 조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94쪽입니다. 출연·지원 및 자조금의 재원 규정입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화하자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96쪽입니다. 자조금의 용도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99쪽입니다. 라, 거출금의 산정 및 납부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현행법과 같이 거출금 산정 기준 및 거출 한도 변경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고 거출금 납부는 부령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7쪽입니다. 마, 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등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원 배제 대상 사업을 농식품부 사업에서 지자체

제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사업 배제 대상자도 자조금 미납자에서 경작신고 미이행자까지 확대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109쪽입니다. 바, 거출금의 수납위탁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행 자조금단체가 미납부 거출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량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합니다.

113쪽입니다. 사, 과오납금의 환급 부분에 대해서도 과오납금의 환급을 현행과 같이 규정하자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15쪽입니다.

아. 자조금회계의 구분 안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하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118쪽입니다.

공시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보칙.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19쪽입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먼저 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입니다.

제정안은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통계 작성·관리 의무, 자조금단체로의 통계 제공,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통계 등의 작성·관리하는 공무원 등의 비밀 누설 및 부당한 목적 사용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계 범위와 기관의 협조의무에 수정이 있었습니다.

124쪽,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입니다.

제정안은 현행법에 준하여 자조금단체가 대의원 선출, 회원 명부 작성 등의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지면적과 약간의 조문 정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전담기관 등의 지정 등입니다.

김선교·박덕흠 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이만화·윤준병·송옥주·임미애 의원안은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별도 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9년부터 농협경제지주를 자조금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명칭과 위탁, 지정취소 등에서 수정이 있었습니다.

137쪽,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지도 및 감독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3쪽입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과 비교했을 때 권한 수임자에 산림청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19쪽입니다.

가. 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같이 정보 이용 내용, 대상을 명확화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124쪽입니다.

나.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협 및 산림조합에 대해 조합명, 주소, 연락처, 해당 품목의 출하실적 요구 근거 신설, 대상별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130쪽입니다.

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과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137쪽입니다.

라.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규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조금단체의 행정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쪽입니다.

마. 지도·감독 조항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43쪽입니다.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민간 위탁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6쪽 별칙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46쪽, 제5장 별칙입니다.

가. 별칙 및 양벌규정입니다.

제정안은 통계 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조금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과 달리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은 자 외에 통계 등 작성·관리 중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의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150페이지, 과태료입니다.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46쪽, 가. 별칙 및 양벌규정은 별칙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150쪽, 나. 과태료 안 조항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 상향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마지막 부칙.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157쪽, 부칙입니다.

부칙의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부칙 조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얘기할 게 있어요?

○김성범 위원 예, 부칙에 대해서.

○소위원장 윤준병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관련 규정을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 법을 제정하면 기존의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까 질문했던 거의 연속선상이라는 한데요, 그 법은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수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성범 위원 아니, 농 자도 살아있다고요, 지금 이게.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수산물자조금법이라고 지금 또 저희 제2소위에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자조금은 이쪽이고 수산물자조금은 그쪽 소위에서 해결할 겁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경과규정 내에 이게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이게 발효될 때 그것도 그대로 있냐.

○김성범 위원 그러면 그 법도 동시에 개정돼서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효가 돼야 되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렇지요.

○김성범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김성범 위원 또 다른 법률 개정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4월 달에 윤준병 의원님께서 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성범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건데……

○소위원장 윤준병 입법적으로 그렇게 조율해야지요.

○김성범 위원 다른 법률의 규정에 특별한 개정 없어도 문제없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예.

○김성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 오늘 처리하실 건 아니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임미애 위원 질문할 게 많아 가지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신장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신장식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다 보지 못해서 그런데 혹시, 저는 정무위 있다 와서 궁금한 게 이거 자조금단체에서 지금도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수급 조절이나 가격 통제했을 때 특수목적법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의 가격 통제나 사업자 간 담합으로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면책 조항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하는 거는 면책된다든지 또는 면책을 위한 어떤 절차나 과정을 만들어 준다는지 하는 게 이 법안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쪽 따라오면서는 못 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수급 조절이라는 게 유통단계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하고는 관련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얼마나 생산할 것만 조절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신장식 위원 출하 조절 안 해요, 자조금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출하 조절은 다른 법률에서 위임하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안정에 관한 법에서 출하 조절 할 때는 공정위와 상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장식 위원 하여튼 간에 몰라서 그냥 여쭙보는 겁니다. 이 자조금단체가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하나의 법인처럼 보이더라도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조금단체에서 출하 조절이라든지 가격 통제라든지 이런 유통과 관련돼서

농산인들이 최저가격이라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공정거래법상 빠져 나갈 다른 조항이 다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다른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신장식 위원** 이 법에는 없길래 여쭙 봤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발의된 이 법안의 내용 중에 생산자단체 측에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수정의견이었는데요, 검토자료의 133쪽에 보면—법안으로 치면 38조—수정의견에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단체라는 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움이 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 단체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7쪽의 24조,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놔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법 제24조에 따른 단체라는 규정을 삽입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신장식 위원** 단체의 범위를?

○**임미애 위원** 단체의 범위를 자조금단체연합회, 그러니까 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로……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한정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자조금단체연합회에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지원센터의 기능에 자조금 평가라든가 정부 위탁 업무 수행하는데 객관성 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문이잖아요. 이 조문에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림축산식품부장이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를 농림식품부에서는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성격에 따라서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미애 위원** 예를 든다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현장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조금을 홍보하고 알리는 기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각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품목단체 자조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품목단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자조금의 사업성과 홍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단체에다가 위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법 제24조에 따른 연합회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

으신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한정하는 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단체연합회는 자조금단체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조금단체의 모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아마 저희들하고 성격상 안 맞는 업무도 있을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조금단체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또 나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업무의 일부를,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를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 기관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 기관에 맡기는 거는 일부를 맡기는 건 할 수 있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상태에서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제24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연합회 이렇게 특정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봤는데, 또 우리 임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가능성은 열어 둘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에 이게 너무 브로드하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인력 또는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절차나 룬을 줘서 적격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정하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좀 보완해 가지고 이후에 지금 자조금단체·연합회도 요건에 맞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룬을 좀 줘서 입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문기관·단체에 이렇게 위임하도록 일단 이 법에서는 정하고, 대통령령 정할 때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의견을 제출하신 자조금단체·연합회 여기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포함 여부를 그때 판단하도록 이렇게 위임해 놓으실 겁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령으로 정리하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산자조금 조성·운영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7)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97)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76)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5)
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06)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1027)

(15시37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 소위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 우리 농식품부하고 또 농협중앙회 팀들하고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경위하고 협의된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와 농협법 개정안 주요 쟁점에 대해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간 협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 법안소위에서 전반적인 협력안을 보고드린 이후 쟁점으로 남아 있던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감사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농협 감사 기능을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안이나 중앙회는 조직 내부에 두되 인사·조직 등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중앙회와 별도 법인으로 농협감사법인을 무자본 특수법인 형식으로 신설하고 중앙회·지주·자회사, 조합과 조합이 출자한 법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구성은 정부안과 동일하되 위원장은 당초 외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안에서 중앙회 추천 2명을 포함한 위원 중 호선토록 하고 중앙회의 출연과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설계, 인력·전산 등 이관 절차 등을 고려하여 법 통과 후 6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내에 조감위의 운영상 독립을 강화하는 기존 중앙회 대안을 시행하도록 하고 2년 내에 독립 법인화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의 감독권 확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농식품부의 감독권을 현재 중앙회·조합 등에서 지주·자회사를 추가하는 안이나 중앙회는 관치 우려 등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의 직접 감독권은 명시하지 않되 농식품부의 농협감사법인에 대한 지주·자회사 감사 명령권과 농식품부 농협감사법인의 지주·자회사 공동감사권을 신설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외부 전문가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였습니다만 중앙회는 관치 우려 등으로 정부 추천에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1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정 범죄에 대해 1심 판결을 포함한 유죄 판결 시 중앙회와 조합원 임직원 대상 직무정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였습니다만 중앙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현행 정부 감독권에 따라 임직원 직무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은 삭제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원 직선제 관련 내용입니다.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회 모두 도입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선거비용 부담 쟁점은 중앙회에서 원칙적으로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중앙회는 정당 가입 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제안을 하였고 정부도 이를 수용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법안소위에서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8년 선거에는 1년, 31년 선거에는 3년의 경과 규정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와 현재 협의를 지속 중에 있으며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31년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차기 회장 선거 도입 시 총선 일정을 고려하여 28년 6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농협 기획상무 참석하셨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한 건 사실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농식품부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발언대로 좀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농협중앙회 기획상무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원안에 비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농식품부와 그간의 간극이 있는 부분을 좀 많이 축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입법이 농식품부…… 잠깐만요. 농협중앙회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극은 많이 좁혔다, 이런 정도 수준이다 이런 것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소위원장 윤준병 예, 알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위원장님,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예, 말씀하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저희가 농협을 둘러싼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좀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농협 개혁이 모든 개혁물의 성과가 조합원의 이익으로 귀결돼야 된다는 점하고요. 두 번째로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와 또 자율성 보장이라는 협동조합 운영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농협의 개혁 방안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되어야 되고 그래서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농식품부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합원 직선제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담의 주체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점, 또 농협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 특수법인의 설립 시에 세무·법률 문제 등의 선결 요건 이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된다는 점이 아직 미완수로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앞에 부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 여쭙보고……

○강승규 위원 아니, 이걸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또 조율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몇 가지 팩트는 점검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강승규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협중앙회가 입법의 당사자입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승규 위원 농협중앙회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지금 농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차관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 일방적으로 진행하니까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몇 가지 확인하고……

○강승규 위원 아니, 국민들에게 지금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가 무슨 다 협의를 해 놓은 것처럼 하고서는 이 회의 와서 우리가 지금 이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강승규 위원 중간에 이게 무슨 얘기에요, 이게?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 제가 좀 이따 발언 기회 드릴게요.

실제 조율할 수 있고 실제 감사할 때 전산 문제나 이 내용은 현재 합의된 내용을 제가 보고받기로는 입법적으로 이렇게 답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지금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감사위원회라는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운영사의 문제점을 갖다 심도 있게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는 논의가 돼서 부분적으로는 입법적인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돼서 농협감사……

○강승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회의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강승규 위원 아니, 기회가 아니라고. 지금 야당과 법안소위를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한테 이런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을 ‘니네 논의한 것에 합의를 했느냐’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잖아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지 않아요 좀 들어 봐요.

그 내용은 입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초청래 그러니까 지금……

○소위원장 윤준병 조금 미흡하지만……

○강승규 위원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기 법안소위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농협중앙회 의견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초청래 저희는 협의되고 있는 의견을 지금 제출한 자료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협동조합 개혁의 세 가지 방향성에 입각해서 농협감사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애당초 주장했던 사내 독립기구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계속 저희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별도 법인을 갖다가 제시를 하였고 그거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할 내용은 이상이고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는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서 우리 법안소위와 농해수위가 엄중한 어떤 사명감과 또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법안과는 관련 없지만 농지법 관련해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지금 농촌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 법안도 결국 아까도 그런 표현도 나오던데 수혜자가 누구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농협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엄중히 우리가 고민하고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농협법이 지금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준병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농협법 관련해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합의를 이룬 것처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보좌진들에게 저게 무슨 소리냐 알아봤더니 농림부에서 이 자료가 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 줬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농림부 측에서 그렇게 자료를 전달하면서 우리 보좌진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회 관계자 5명 정도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5명 아무도 합의해 준 적 있다고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니까? 추석 앞두고 여론전 하는 겁니까? 지금 농협법 가지고 여론전 해서 이 농협법을 그렇게, 여론에 따라서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직선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직선제 그렇게 하면 우리 농협조합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해가 돌아갑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중앙회 대안으로 하는데 차관님, 출자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여

기에 합의했어요?

제가 이것 그냥 놔두고 있어요. 나중에 감사에서 내가 증인대에 세우려고 그래요. 누가 합의를 해 줬는지 농협 관계자 다 증인대에 세울 거예요.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추석 명절 앞두고 의원실에다 이런 합의도 안 한 문서 내놓고 여당 위원장께서는 기자회견하고…… 이게 여론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농지 전수조사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 몰라요? 농촌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 망가뜨려 놓고 이것 농협법 가지고 또 그럴 거예요? 이것 제대로 논의해서, 농협 개혁하자는 것 누가 반대를 해요? 조합원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가 반대하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왜 자꾸 여론전을 해요? 누가 한마디 한 거예요, 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 심도 있게 우리 논의해요.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할 말 많아요. 농촌에 가면 농협중앙회만 아니라 농협 단위조합들, 1100개 단위조합에서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중앙회에서 이것 합의해 줬다고 그러니까요. 중앙회의 누가 합의해 줬냐고 저보고 확인 좀 해 달라고, 쳐들어가겠다고 단위조합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하나 지금 어디 누가 합의해 줬어요, 누가? 이게 다 쟁점으로 지금 토론되고 있는데, 논의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요.

협의하신 분이 일단 지금 경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농협기획실과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른 보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합의했어요? 무슨, 누구하고 합의했어요? 기획상무하고 합의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협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협의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협의 결과 출자 없는 무자본 방식으로…… 이게 협의했다는 게, 협의 결과는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런……

○**강승규 위원** 그건 무슨 표현이에요? 협의했다는 건 무슨 표현이야, 논의를 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논의한 결과 무자본 특수법인 출연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결과는 그렇게 났다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그게 합의예요? 합의 내용이에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나중에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봅시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분이 농협의 기획상무님이신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김용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농림부랑 말에 어폐가 있는 게 협의는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상무님 말씀 들어 보니까 세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협동조합 정신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김용태 위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중앙회장 직선제는 의결권이 없는 회원한테 의결권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협동조합과 맞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협동조합의 정신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출자한 회원한테 의결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같이 주는 게 제일 첫 번째 정신인데 아까 말씀에 따르면 전혀, 이 농협 법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와 농림부가 이견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 가지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 말씀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김용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양수 위원 잠깐만 있어요. 나도 물어볼 테니까 그 뒤에 앉아 있어요.

○김용태 위원 저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싶은데요. 세계의 유례가 없는 선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법인적 특성상 입법재량으로 가능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익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으로 든 금권선거 예방효과는 실증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이 의결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의결권을 가진 회원조합은 의결권을 잃게 되고 중앙회에 직접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이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선제를 하려면 새로운 농협을 구성해서 새로운 조합원분들한테 출자를 하게끔 해서 그분들한테 회원 자격을 주는 것이 협동조합 정신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직선제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농림부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근본 속성은 의결권과 출자 책임이 결합돼 있다는 데 있고요. 이 정체성과 충돌하는 직선제를 추진할 공익적 이유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의 등가성 문제로 반대합니다. 현행 1조합 1표를 직선제로 바꾸면 조합원 수에 따라 조합 간 영향력 차이가 최대 90배까지 벌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농협에서는 개별 조합원도 중요하고 단위농협도 중요할 텐데요. 두 주체의 위상을 중앙회장 선출에 조화롭게 반영하려면 조합을 배제하는 직선제가 아니라 조합 기반의 방식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동조합 기본법과 상충됩니다. 농식품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제1항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제1항과 제2항이 충돌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13조 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 해석대로 농협법은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해당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13조 1항 그다음에 나온 2항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3조 1항과 2항이 충돌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농협법 개정 내용도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설립·운영 원칙에 맞아야 한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림식품부에서 이 농협법과 관련해서 외부 법률 자문을 3곳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곳에 법률 컨설팅 받은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법률 자문 받은 업체가 어디인지 업체명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내용만 받았거든요. 그 업체명이 어디인지 법무법인 명칭을 저희 의원실에 좀 알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법무법인과 최근 5년간 우리 농림부가 자문 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그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먼저 하신다고……

○이양수 위원 먼저 하세요.

○신장식 위원 협의 결과 2번 정부 감독권 확대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정부의 직접 협의 결과 농식품부의 지주·자회사 감사 명령 플러스 공동 감사권 신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쭙보는 건데요. 그러면 특수 여기 협의 결과라고 나와 표시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차치하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라면 출자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법인이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개별조합뿐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여기서 말하는 거는 농식품부의 감독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쭙보는 건 그래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별도 법인이 감독하는 대상은 중앙회하고 단위조합이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닙니다.

○신장식 위원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중앙회 조합 그다음에 중앙회의 지주·자회사 이런 데를 하고요.

○신장식 위원 아니아니, 농식품부의 지주·자회사 감사 명령이라면서요. 이거는 직접 하는 게 아닌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식품부가 농협 감사위원회에 지주·자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장식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명령 없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새로 만들어진 감사 특수법인이에요. 농협감사법인이에요. 농협감사법인이 자체적

으로 감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중앙회하고 단위조합 아니냐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일단 조합에 대해서는 상시 감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회의 지주·자회사에 대해서는……

○**신장식 위원** 아니, 제가 그냥 여쭙보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농협감사법인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두는 별도의 농협감사법인이 감사를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중앙회하고 단위조합 맞지요? 나머지는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또는 공동 감사권, 농식품부 농감위의 지주·자회사 공동 감사권 신설한다, 협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여쭙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다시 말씀드리면 농협감사법인은 자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조합입니다. 조합이고 그다음에 농식품부……

○**신장식 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 질문, 중앙회와 단위조합은 법인 숫자로 보면 농협 전체, 지주·자회사 등등등 다 했을 때 숫자는 제일 많지만 사실 경제 규모으로 보자면 금융지주, 경제지주를 빼면 경제 규모로 놓고 보자면 자율적으로 감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2·30%를 넘지 못할 것 같은데, 경제 규모로? 단위조합 수로는 99%일 거예요, 아마.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경제 규모로 보면 20·30% 이상 독자적으로 감사 결정을 못 하지 않아요?

○**이양수 위원** 답변을 해 줘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금융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위를 통해서 저희……

○**신장식 위원** 아니, 그거는 검사 요청을 해 갖고 하는 거고 독자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는 숫자로 보면 99%인데 경제 규모로 보면 20·30%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신장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무자본 특수법인까지 만들어서 감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회로부터 독립해서 감사하자고 했으면 경제지주, 금융지주를 제외하고 했을 때 보기에는 숫자는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돈 되는 데는 다 감사 직접 자율적으로 못 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별도의 법인을 외부에 만들었으면 감사의 범위도 그만큼, 그런 공력을 기울인 만큼 넓히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본 거예요.

○**소위원장 윤준병**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요?

○**신장식 위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전 사업구조 개편을 할 때부터 저희가 금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신장식 위원** 제가 정무위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금융위의 농협중앙회 감사나 금융지주 감사가 얼마나 여러 난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이양수 위원 아니, 답변을 왜 이렇게 못 해요? 금융은, 신용은 원래 신·경 분리 하면서 안 하기로 했고 경제 분야에서 지금 조합 분야,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만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 50%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나머지 50은, 50의 50은 그러니까 제외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답변을 못 해요? 쉬운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규모로……

○이양수 위원 나중에 별도로 신장식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시고……

○신장식 위원 잘 몰라서 그런가.

○이양수 위원 뭘 몰라요.

저기 먼저 좀…… 내가 여쭙볼게요.

우리가 합의하고 협의가 다른 거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이양수 위원 합의는 양쪽이 회의를 해서 공동된 결과를 도출하고 그렇게 하자고 한 거고 협의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다른 사람한테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해도 합의는 한 거예요. 맞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이양수 위원 여기 지금 ‘협의 결과’라고 해서 쓰여 있는 것은 합의된 것은 아니네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

○이양수 위원 합의된 것은 아니고…… 아닌 것 맞지요, 합의된 것? 사인하거나 합의한 것 아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협의입니다, 협의.

○이양수 위원 협의고, 그러면 한 가지만……

회장선거에서 선거 비용은 중앙회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선거를 전 조합원으로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그 부분이 지금……

○이양수 위원 미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저희는 선거 비용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부에서 책임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 비용을 달라는 얘기는 회장에 대한 전 조합원 선거는 합의를 한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그것은 저희가……

○이양수 위원 하게 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내부적으로 조합원 직선제는 조합원의 민주적 관리 차원에서도 수용한다고 지난 4월 달에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농협중앙회에서는 조합원 직선제는 수용한다……

○이양수 위원 회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중앙회가 부담한다라고 협의한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아닙니다.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부담을 해 주면 조합원의 이익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개호 위원 그것은 농협중앙회의 뜻이라는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청래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들어가세요.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농림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 두 장짜리?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 이것 국회에다 보고하려고 만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아니, 지금 합의된 것도 아니고 협의된 것을…… 그리고 협의된 것도 지금 서로 얘기가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협의 결과 회장 피선거권은 중앙회 대안을 수용했다, 그런데 선거 비용은 중앙회 부담 원칙이다…… 중앙회 부담 원칙은 농림부 얘기고 지금 저쪽 농협 얘기는 중앙회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써 났어요. 이것 허위 보고예요, 국회에서.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이양수 위원 저분이 거짓말한 건가요? 농협이 거짓말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내가 예전에 신경분리할 때도 농협하고 농림부하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자기네 유리한 대로 국회에 와서 얘기해 가지고 아주 힘들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재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보고하면 안 돼요, 막 쓰면 안 되고. 서로 사인이라도 받아서 올려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사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리고 회장에 대한 조합원 전체의 선거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는 찬성했을지 모르지만 일선 조합에 가면 조합원들, 농민들은 아직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들어서 합의해 가지고 이것 협의된 거다, 합의된 거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단위조합, 조합으로 가면 조합원들, 농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회와 단위조합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같은 농협이라고 똑같지 않아요. 또 거기 직원들과 조합장들과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협의했다, 합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농림부에서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국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해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 저는 우리 농림부 공무원분들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이 중에서도, 협의한 결과로 써 놓은 것 중에도 제 의견하고 다른 게 많아요. 일일이 다 언급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도 있으니까 제가 저것 하겠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서로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의 의견이…… 이렇게 협의할 게 아니고 농림부의 의견을 국회로 주시고 농협의 의견을 국회에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단위조합이나 농민들 의견까지 취합을 해서 여기에서 다 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림부의 주장을 열심히 하시고 뭔가 막 도출하려고 신경분리할 때처럼 자꾸 억박지르고…… 약속한 것들 다 나중에 지키지도 못했잖아요, 농림부에서. 하여튼 경솔한 것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감사합니다.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주요 쟁점 협의 결과 보니까 합의 결과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당황했는데 이것은 다시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나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안, 윤준병 의원님 안의 178조에 보니까 피감사기관을 언급해 뒀네요, 피감사기관들. ‘농협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1항 1호가 조합 등과 그 자회사, 2호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팔호 열고 ‘손자회사 및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포함’ 했고요.

또 3호가 있습니다. 3호가 있는데, ‘그 밖에 농협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호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보면 뭐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3호에 들어갈 피감사기관이 안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전제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현재 지방출자출연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출연·출자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런 기관들이 있나요? 자회사, 손자회사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도 아닌 제3의 기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 취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조합……

○이개호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기관이 없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조합이 출자한 기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조합의 자회사 같은……

○이개호 위원 조합?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이개호 위원 일반 단위조합이나 증손조합?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단위조합이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를……

○이개호 위원 중앙회가 아니고 조합이 출자한 회사?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이개호 위원 조합이 출자한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이개호 위원 중앙회의 포괄적 지도감독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들어갑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조합의 출자 비중을 따져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개호 위원**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것 한 번 더 살펴봐 가지고 그 외에 또 다른 기관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협중앙회하고 농식품부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취지는……

○**이개호 위원** 합의를 하도록 요청하셔야지, 합의.

○**소위원장 윤준병** 뭐 서로 합의라는 전제하에서 협의한 결과는 합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워딩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다만 그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늘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넓혀서 반영해서 입법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가능하면 이 부분은 중앙회의 입장이 나름대로 고려돼서 협의가 진행된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여전히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여서 오늘 합의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10월 27일 날 소위 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상정돼서 논의된 지가 다음 10월 달 되면 소위에서만 아마 6회차인가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숙의와 전향적인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 끝나요? 나 한마디만 해도 돼요, 농림부에?

○**소위원장 윤준병** 예, 말씀하십시오.

○**이양수 위원** 농협에 대한 개혁 그런 것은 다들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세부적으로 좀 보면 이걸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농림부에서 강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일을 아주 잘 처리해요. 딱딱 각에 맞게 척척 해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조직은 아니에요.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있고요, 민간에 맡겨 놔야 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맡겨 놔야 될 것까지 공직으로 가져와서 다 산하기관……

우리나라 산하기관 보십시오. 도로공사 같은 것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토지공사, 철도공사, 이런 게 글로벌기업이 돼요? 도로공사, 주택공사 이런 데가 월급을 100억을 주든 100원을 주든 자기네가 사장 데려다가 해야 되는데 맨날 정치인들 출마하다 떨어진 사람 또는 출마할 사람 데려다가 여기저기…… 물론 정치권의 잘못이지만, 정권의 잘못

이지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잘못인데, 그런 사람들 산하기관장 보내 가지고 효율성 다 떨어뜨려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협까지, 농협을 민간에 놓고 협동조합의 묘를 살려 가지고 좀 어수선했어도 효율성 있고 구석구석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지 딱 산하기관처럼 해 가지고 아주 각 나옴과 과제 수행별로 해 가지고 업무분장 딱 해 놓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 조직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농민들의 삶이 좋아지냐고요. 그런 식으로 이것 합의 이끄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이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방침은 농협법 개정안을 가급적이면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게 너무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부득이……

○이개호 위원 부득이 강행 처리하겠다 그런……

○소위원장 윤준병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개호 위원 농촌의 구조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여야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소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가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두 간사님들께서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회의 차수를 정해 가면서 수시로 접촉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두 간사님 간에 어느 정도 조율안이 나와서 그 조율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거나 처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뭐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가급적이면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두 간사님들이 좀 더 성의 있게 의지를 가지고 접촉을 해 주시라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강승규 위원님이 완고해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강승규 김성범 김용태 문금주 신장식 윤준병 이개호 이양수 이재관 임미애

#### ○청가 위원(1인)

이성권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산업혁신정책관 이시혜

동물복지정책관 이용직

축산정책관 이재식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 조청래

임시회의록